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01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의의원 : 최재규 의원,

박주용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산세를 한시적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의 한시 감면 규정 신설(안 제12조의4)
- 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p> <p>② (생략)</p> <p>제8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을 경감한다.</p> <p><신설></p>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 -----.</p> <p>제12조의4(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p>

녀 가구의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2025.10.1. 타법개정, 2026.1.2. 시행)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법률)」(2025.1.11. 타법개정, 2025.7.22. 시행)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법률)」(2025.10.1. 타법개정·시행)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재산세를 면제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재정수반요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재산세에 대한 한시적 면제(2028년 12월 31일限)로 인해 지방세입 감소 전망

3. 관련조문

-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 제4조 및 제18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적용범위)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에 따라 직권 면제
- (적용대상)
 - 2025.6. 기준 관내 미성년자 3자녀 이상 세대 1,100세대 정도.
 - 한시 면제 기간 내 미성년자 3자녀 이상 세대수가 변동 없을 것으로 가정함.
(미성년 1자녀 이상이 성인이 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배제함)

- 한시 면제 기간 내 이사 등에 따른 적용 주택 변동 및 해당 적용 주택의 시가표준액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함.

- (적용기준)

- 2025.6.1. 기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기준 세율을 적용함.
- 2025.6.1. 기준 「지방세법」 제112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제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기준 세율을 적용함.

(단위 : 천원)

구분	군		시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세액	44,819	101,815	23,460	8,953

(자료 : 세무과·종합민원과)

- (추계기간) 2026년 과세기준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을 추계함.

나. 추계의 결과 : 연평균 146,634천 원 정도 세입 감소 예상

(단위 : 천원)

구분	2026	2027	2028	합계	
예상 총세입(㉠-㉡)	172,362,587	172,362,587	172,362,587	517,087,761	
예상 세입(㉠)*	211,540,324	211,540,324	211,540,324	634,620,972	
세입 감소 (㉢)	비과세·감면액 추정 총액(㉠+㉤)	39,177,737	39,177,737	39,177,737	117,533,211
	비과세·감면액**(㉠)	39,031,103	39,031,103	39,031,103	117,093,309
	조례 시행에 따른 예상 면제액 (㉤., 재산세+도시지역분)	146,634	146,634	146,634	439,902

* 2024년도 결산상 지방세 징수액이 3년간 변동 없을 것으로 가정함.

** 2024년도 결산상 비과세·감면액이 3년간 변동 없을 것으로 가정함.

작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최 재 규 (☎ 2053)
-----------	---------------	-------------	----------------